

대전지방법원 2020. 11. 11 선고 2020가합82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조합

피고유한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1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대전광역시 유성구 C 대 2029.4m² 지상 별지 도면표시(1), (2), (3), (4), (5), (6), (7), (8), (9), (10), (11), (12), (13), (14), (15), (16), (1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층 764.26m², 2층 495.21m²를 포함한 건물의 전체를 철거하고,
나. 위 가.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,
다. 157,300,000원 및 2020. 7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2,1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재판장판사김성률

판사고영식

판사김주연

별지